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5년 8월)

- 무료로 영화를 상영할 때 OTT를 이용해도 되나요? -

2025. 9. 30.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'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학교안심 소나기 R' 글꼴로 생성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□ 용어 정의

○ (월간 워드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단어 100개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
○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저작권상담 내용 중 주요 사례를 요약 정리

<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 단어 순위>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캐릭터	등록
2	영상	이용
3	사진	계약
4	프로그램	침해
5	영화	회사

*'저작권, 저작물'은 순위에 든 종류를 포괄하는 단어로 순위에서 제외

< 8월 주요 상담사례 >

○ (공연) 공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려 한다. DVD로 상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DVD가 아닌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이용하여 상영해도 되는가?

- 저작권법상 '공연'은 저작물 또는 실연·음반·방송을 상연·연주·가창·구연·낭독·상영·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(전송을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(제2조 제3호).

- 따라서,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. 공연을 행하는 권리인 '공연권'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해당한다. 저작권법상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(제46조). 이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(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등)을 구분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-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으며, 질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다.

- 해당 내용은 "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  ① "반대급부를 받지 아니"한다는 것은,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. 여기서 반대급부란,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말한다.
  ② "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"이란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, 블루레이(Blu-ray) 등을 말한다. 다만, 넷플릭스,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및 다운로드된 파일 등은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,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.
  ③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(시행령 제1호~제7호), 특정 시설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발행일로

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(시행령 제8호).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'커피전문점'등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, 제8호의 '사회복지관' 등에서는 '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'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다.

- 결론적으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므로 상업적 목적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으로 저작권자 이용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단, OTT(넷플릭스 등)에서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이용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'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제한'을 명시한 경우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
< 시스템(챗봇)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>

순위	질의
1	태극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?
2	저작권 등록 문의
3	저작권법 상담사례
4	등록 절차
5	저작권 (Copyright)
6	저작권교육
7	신규 권리등록
8	저작권(이용 일반 및 제한)
9	저작권 용어사전
10	저작권 교육

*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챗봇: 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

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'네이버(주), (재)네이버문화재단의 나눔스퀘어' 글꼴로 작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5년 8월) 저작물은 **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**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